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교습과정별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 1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4
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4
1.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4
2. 학원의 설립·운영 7
2.1. 학원의 설립준비 7
2.1.1.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7
2.1.2.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9
2.1.3. 학원의 명칭 12
2.1.4.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13
2.2. 학원의 등록 13
2.2.1.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14
2.2.2.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16
2.3. 학원의 운영 18
2.3.1.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18
2.3.2. 교습비 등 징수 22
2.3.3. 학습자 수의 제한 26
2.3.4. 보험 등 가입 의무 27
2.3.5.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28
2.4. 휴원 및 폐원 29
2.4.1.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29
3. 교습소 설립·운영 31
3.1. 교습소 설립준비 31
3.1.1. 입지 및 시설기준 31
3.1.2. 교습소의 명칭 32
3.2. 교습소 신고 33
3.2.1. 교습소 신고 절차 33
3.2.2. 사업자등록 34
3.3. 교습소 운영 36
3.3.1.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36
3.3.2. 교습비 등 징수 37
3.3.3.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40
3.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41
3.4.1.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41
4. 개인과외교습자 42
4.1. 개인과외교습 신고 42
4.1.1.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42
4.1.2. 사업자등록 43
4.2. 개인과외교습 운영 44
4.2.1. 교습비 등 징수 44
4.2.2.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47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1.1.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이란?

▪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내 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교습소"란?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 용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개인과외 교습"이란?

▪ 개인과외 교습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내 용	
1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2. 학원의 설립·운영

2.1. 학원의 설립준비

2.1.1.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학원의 구분

학원의 유형

▪ 학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구분	내 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반영을 위해 교과편성을 이와 달리할 수 있음)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참조).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별표 2).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2.1.2.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별 학원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육환경

학원 시설의 관리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유해업소의 종류

-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 학원의 설립·운영 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시설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2.1.3.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표시를 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 학원의 명칭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72쪽).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OO(입시)학원, OO보습학원, OO음악학원, OO독서실

▹ 타교습과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보습논술학원 → OO연기학원(X)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
>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은 금지됩니다.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학원 명칭의 영문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72쪽).

▹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예시) 이앤비학원(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SDA외국어학원) 등

-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시)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예시) 리더스(leaders)보습학원 등록 가능, leaders보습학원 등록 불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시)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2.1.4.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7.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8.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학원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참조).

2.2. 학원의 등록

2.2.1.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

▪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 절차

▪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칙(院則)
- 학원 시설평면도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수리

▪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조건부 등록

조건부 등록

▪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원칙(院則)
- 학원 시설평면도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조건부 등록 수리

▪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변경등록 등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 교습비등이란?**
>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변경등록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학원 변경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사항 통보

▪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등록 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2.2.2.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학원 개원

학원의 개원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법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학원의 운영

2.3.1.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⑨와 관련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참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출서류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범죄경력조회서	1.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국적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2.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3.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2.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학력증명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2.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3.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4.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1. 여권: 유효할 것. 다만,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일 것.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이때 신분증명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학원설립·운영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단서).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 ※ 학원의 강사 채용 및 해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2.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 등
- 등록증명서의 등록 번호
- 학원의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
>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table>
<tr><td rowspan="8">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td><td rowspan="6">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 rowspan="5">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td><td rowspan="5">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td><td>없음</td></tr>
<tr><td rowspan="2">독서실의 경우</td><td rowspan="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td><td>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학습장소 사용 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 rowspan="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able>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2.3.3. 학습자 수의 제한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학원의 교습과정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4. 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학원 설립·운영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화재보험의무가입

화재보험의무가입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구분	내용
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5.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수강생 보호·감독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된 때에는 즉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취업제한 및 경력조회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감염병에 관한 조치

▪ 학원설립·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위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장부 및 서류비치

장부 및 서류비치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과대 광고 금지

과대 광고 금지

▪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2.4. 휴원 및 폐원

2.4.1.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및 폐원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폐원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휴원·폐원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도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3. 교습소 설립·운영

3.1. 교습소 설립준비

3.1.1. 입지 및 시설기준

교습소의 입지

교습소의 용도지역

▪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 용도지역별 교습소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교습소를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장소 등

▪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교습소의 교육환경

교습소 시설의 관리

▪ 교습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유해업소의 종류**
>
> -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 -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1.2.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음악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

▪ 교습소의 명칭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119쪽 참조).

- 교습소의 고유명칭 다음에 표시되는 교습과목에서 "국어"와 "논술"은 별개의 과목으로 혼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OO국어논술교습소(X), OO국어교습소(O), OO논술교습소(O)

- 이미 상표로 등록된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
>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은 금지됩니다.

3.2. 교습소 신고

3.2.1. 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및 제한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교습소의 신고 절차

신고

-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5종 제12호).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2).
-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교습소의 변경 신고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변경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교습소 변경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교습소 시설평면도(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위반 시 제재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 ※ ①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② 교육감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③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④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 · 해당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 · 해당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 ※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3.2.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법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교습소 운영

3.3.1.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

교습자의 자격 등

▪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자격기준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의 운영, 해당 교습소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3.3.2.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 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 등
-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 교육감은 교습소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table>
<tr><td rowspan="7">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td><td rowspan="5">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 rowspan="4">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td><td rowspan="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td><td>없음</td></tr>
<tr><td rowspan="2">독서실의 경우</td><td rowspan="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td><td>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학습장소 사용 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td></tr>
<tr><td colspan="2" rowspan="2">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 rowspan="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r><td colspan="6">※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td></tr>
</table>

위반 시 제재

▪ 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5조제4항).

▪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3.3.3.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교습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교습자의 연수 의무

교습자의 연수 의무

▪ 교육감은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전단).

장부 및 서류비치

장부 및 서류비치

▪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 금지

▪ 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본문).

▪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단서).

3.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3.4.1.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다만 교습자가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3항 및 제17조제2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4. 개인과외교습자

4.1. 개인과외교습 신고

4.1.1.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22호서식).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의2).

>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
> -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개인과외교습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 **※ 교원의 개인과외교습 금지**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4.1.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법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개인과외교습 운영

4.2.1.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징수

"교습비 등" 이란?

▪ 교습비 등 이란 학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영수증 교부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
2.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교습비 등 게시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그 밖의 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 등
-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
> -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교습비 등 반환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반환사유 발생일</th><th></th><th>반환금액</th></tr>
<tr><td colspan="2">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td><td>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td><td></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td></tr>
<tr><td rowspan="5">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td><td rowspan="4">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td><td rowspan="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td>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td><td>반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 rowspan="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td><td>교습 시작 전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td><td>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td></tr>
<tr><td>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
</table>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습비 환불 등 관련 소비자 분쟁에 관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 1372)도 가능합니다.

4.2.2.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그 밖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신고증명서 게시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표지부착 의무

-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의3).

과외교습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의무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 다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2항 및 제17조제3항).

장부 및 서류비치

장부 및 서류비치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 금지

아동학대 금지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 교육감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교습자에게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